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4.
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0월 14일

나. 발 의 자: 이규선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1. 1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규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'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(조례·규칙) 개선율'의 개선 과제 대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지역제한 문구 삭제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역제한 문구 삭제(안 제3조)
-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작성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‘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(조례·규칙) 개선율’의 개선 과제 대상으로 우리 구 조례의 지역제한 문구 삭제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1조 및 안 제5조제1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작성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.
  - 안 제3조에서는 지역제한 문구를 삭제함.
- 검토 결과
  - 서울시에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련 조례로 지역제한 문구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8곳으로 안 제3조의 “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”와 “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”에서 지역 관련 내용을 제외하는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위촉의 폭이 넓어져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됨.
  -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작성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법적합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규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10.

발 의 자: 이규선·이순우·김지연  
양송이·전승관 의원  
(5인)

## 1. 제안이유

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‘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(조례·규칙) 개선율’의 개선 과제 대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지역제한 문구 삭제 요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지역제한 문구 삭제(안 제3조)

나.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작성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

## 3. 개정안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 
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”을 “예산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지방회계법」 제3장”을 “「지방회계법」 제3장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시행령</u>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자격)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<u>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</u></p> <p>제5조(검사위원의 직무) ① 검사위원은 <u>「지방회계법」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빙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 시행령</u>」 제83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자격) ----- --- 다음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예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5조(검사위원의 직무) ① ----- ----- 「<u>지방회계법</u>」 제3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